

광주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20가단51983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단체

피 고 B

변론 종결 2020. 12. 4.

판결 선고 2021. 1. 22.

주 문

1. 전남 영광군 C 임야 29488㎡에 관하여, 가. D와 E사 사이에 2019. 6.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D에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 원고는 D와, 1 2017. 7. 12. 보증금액은 38,250,000원, 보증비율은 85%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2 2018. 1. 15. 보증금액은 18,000,000원, 보증비율은 90%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3 2018. 4. 6. 보증금액은 17,000,000원, 보증비율은 85%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고(이하 위와 같이 체결된 3건의 신용보증약정을 통칭하여 '이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는바, D는 원고가 발급한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F조합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

) D는 F조합에 대출금을 약정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여 2020. 1. 16.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근거하여 2020. 3. 27. F조합에 합계 63,975,52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 이후 원고는 D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20차전106815호로 구상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바, 위 사건에서 2020. 4. 7. 'D는 원고에게 64,119,165원과 그중 63,957,831원에 대하여 2020.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은 2020. 4. 17. D에게 송달되어 2020. 5. 2. 확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이사건 구상금 채권'이라고 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 등

○ D는 전남 영광군 C 임야 2948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신이 대표자인 E사와 2019. 6. 26.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E사에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2019. 7. 12. 접수 제960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이후 E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2020. 1. 15.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20. 1. 30. 접수제115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D의 자산 현황 등

○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D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2017년식 쏘렌토 차량(차량 등록번호 G) 중 1% 지분, 2011년식 그랜저 차량(차량 등록번호 H) 중 1% 지분등 이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적극재산은 없었다.

) 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D는 소극재산으로 F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구상금 채무, I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J카드에 대한 카드론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었는바, 그 채무의 합계는 100,000,000원을 초과한다.

(4) D와 피고 사이의 관계 등

○ D는 피고의 아버지인 망 K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D는 2019. 1. 23.부터 2019. 11. 4.까지 피고를 세대주로 하여 주민등록을 같이하였는바, 피고의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D가 피고의 모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2019.6. 27. 발급된 D에 대한 농지 원부에도 관계 부분에 피고는 자녀, 피고의 배우자인 L은 며느리라고 기재되어 있다.

○ 한편, D가 1% 지분을 가진 2017년식 쏘렌토 차량(차량 등록번호 G)과 2011년식 그랜저 차량(차량 등록번호 H)의 나머지 99%의 지분권자는 피고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하여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당시에는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신용보증약정은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그로부터 약 7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2020. 1. 16.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를 하여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한편, 위 인정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D의 자산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증여계약 체결 당시 D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무자력이라고 봄이 타당한바, 무자력인D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대표자인 E사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를 포함한 D에 대한 다른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 다. 한편 D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익자인 E사와 전득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한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나 전득자 명의의 등기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판결 등 참조),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에 대하여 101,21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고,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 시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시기,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발생 시기 등에 비추어 선의의 전득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고, 수익자나 전득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① 피고는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 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채무자라는 D가 아닌 E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고, 등기원인도 증여인점, ② 실질적인 등기원인은 대물변제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지만,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3357 판결 등 참조), ③ 그 밖에 이인정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D와 피고 사이의 관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선의의 전득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하는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재